파주시 공고 2026-1770호

2026년 파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모집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파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파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 **가입대상** : 파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제조업) 재직근로자(핵심인력)

○ **모집인원** : 24명 (기업당 최대 5명 이내)

○ **지원기간** : 공제 계약일로부터 3년간

* 공제부금 납입기간 : 5년

○ **지원내용** : 가입인원 **1명당** 기업부담금 중 **월 10만원, 3년간 360만원**

* **공제계약 이후 핵심인력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市 지원금 전액 회수**

○ **월납입액** : 핵심인력 월 11만원, 기업 월 13만원, **파주시 월 10만원**

* **파주시 지원금은 공제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정**, 기업은 4, 5년차 월 23만원 부담

○ **총적립액** : 5년간 2,000만원 이상(660만원^{핵심인력} + 1,020만원^{기업} + 360만원^{파주시})

○ **운영기관** : 파주시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대상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구 분	내 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일 현재, 파주시 소재 기업(사업자등록증 주소 기준) ○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의 제조기업
핵심인력	○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자격, 학력, 경력 등 제한없음. 단, 기간제근로자 및 단기근로자 제외) ○ 5년 이상 장기재직이 가능한 근로자(만기 시 재직여부 확인)

【 지원 제외 대상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대상 제외 업체(비영리법인 등)
- 해당 기업의 대표자 및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또는 참여한 자(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주관 청년희망적금 등)
-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경우
-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자가 계약 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가입제한 대상 기업 및 근로자

□ 지원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주체** : 파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제조업)의 대표자

○ **신청인원** : 기업당 최대 5명

○ **신청방법** : ①온라인 접수*, ②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경로 : 홈페이지(www.sbcplan.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지자체 협약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아래의 필수제출 서류목록 일체

구 분	필수제출 서류목록
공통	○ 파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공제계약 청약서(붙임 1, 붙임 2) ○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표준서식(붙임 3) ○ 인감증명서 1부(기업 필수제출, 핵심인력 경우 인감 날인 시 제출)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기업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법인 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각 1부
핵심인력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확인서 1부(홈텍스 발급)

□ 접수처

○ 온라인 접수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부*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기타 유의사항

○ 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서는 반드시 인감 날인(인감증명서 제출) 또는 자필서명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공제계약 청약서'에 명시된 공제부금 전액 매월 납입하고, 정상 납입한 기간분에 대해 분기별로 파주시 지원금을 적립

* 공제부금 미납 시, 납부 시까지 시비 지원금 지급 유보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내용 준용

□ 문의처

○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T. 031-940-453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부 (T. 031-920-6738)

□ 귀책사유별 지원금 지급 안내

○ 중도해지 시 공제부금 환급관리

중도해지 사유		중도해지금 환급대상		
		지방정부 지원금	기업 납부금	근로자 납부금
기업 귀책사유	· 중소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 가입기간 중 남양주 시외로 사업장 이전			
	· 기타 기업의 요청 등에 의한 해지			
근로자 귀책사유	· 근로자 자발적 퇴직(이직)	지방정부	기업	근로자
	· 근로자의 사업자등록(창업)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 기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해지			
기 타	· 근로자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 함께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지방정부	기업	근로자

○ 가입기간 중 '지원제외 해당사항' 적발 또는 중도해지 시, 공제부금 환급관리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

- 기업 및 근로자 정상 납입내역 확인 후, 적립금 지급 (분기별)

 * 미납 발생시 보조금 지급은 보류되며, 지원기간 내 미납해소 시 정산시기에 보조금 지원
 * 중도해지가 발생한 분기의 적립금은 지급 제외

< 붙임 1 >

파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 표 자			상시고용인원수		명
설립일자	. . .		주요제품(상품)/업종		/
자산총계	백만원		매출액/수출액		백만원/ 천불
주 소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				
연락처 대표자	전화	() -		E-Mail	@
연락처 담당자	성명			전화	() -
	E-Mail	@		휴대폰	() -

핵심인력 (근로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민등록상 거주지)
	①			
	②			
	③			
	④			
	⑤			

*핵심인력 확인사항 **(미확인시 가입 불가)**
- 핵심인력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이며, 가입희망 기업의 대표자 및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확인시 ✓표기)
- 공제계약 이후 3년 이내 핵심인력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 시 市지원금은 전액 회수됩니다. □ (확인시 ✓표기)
- 공제부금 미납 시 납부 시까지 파주시 지원금 지급은 유보됩니다. □ (확인시 ✓표기)

*대표자 확인사항 **(미확인시 가입 불가)**
- 파주시 지원금은 공제 계약일로부터 3년 한정으로, 기업은 3년 이후 최소납입금 23만원을 부담(의무사항)하여야 합니다. □ (확인시 ✓표기)

*제출서류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 월 기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신청 월 기준), 대표자 신분증
- 핵심인력 :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 사실여부확인서

위와 같이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서명/인	핵심인력1.	서명/인	핵심인력2.	서명/인
핵심인력3.	서명/인	핵심인력4.	서명/인	핵심인력5.	서명/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부장 귀하

< 붙임 2 >

[서식 제1호]

내일채움공제

계약번호	

내일채움공제 청약서

업체개요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	성명							생 년 월 일								
	자택주소	주소(도로명) : (우편번호)														
	입사년월일							부서/직위								
	핸드폰번호							E-mail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 공제계약 관련 주요 정책 및 공지내용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발송됩니다.															
기간	□ 3년(청년연계형)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가입기간은 계약성립 후 단축할 수 없으며, 가입기간 연장은 가능합니다(단, 청년연계형은 기간 고정).															
공제부금	**중소기업 (부금월액)**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핵심인력 (부금월액)**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금 원								금 원						
	* 중소기업 부금월액은 파주시 지원이 종료된 후인 4, 5년차에 납부할 금액을 기재 (최소납입금 23만원)															
자동이체출금신청	**중소기업** 은행명								**핵심인력**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이체일	이체적용월 (년 월), 이체일(□ 5일 / □ 15일 / □ 25일)														
	1. 위의 예금계좌를 핵심인력과 중소기업 부금월액의 자동이체 납입 계좌로 지정·신청합니다.															
	2. 위의 예금계좌의 잔고가 이체일에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금이 미납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3. 출금이체를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 자동이체계좌는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기업은 기업명의 계좌, 핵심인력은 본인명의 계좌)															
	4. 제1회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이후 납부기일 이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내일채움공제 계약을 청약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서류 :

중소기업	핵심인력
1.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1.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핵심인력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가입권유자	소속		직위		성명	
최초인지경로	TV·라디오 ()	연계지원사업 ()	신문·잡지 ()	인터넷검색 ()	주변 소개 ()	중진공 소개 ()
	기타 :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및 확인

「내일채움공제」 약관의 주요 내용

[계약의 성립] 공제계약의 청약이 승낙된 때에는 청약자 모두가 제1회 공제부금을 납입한 일자에 공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며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취소] ①공제청약한 중소기업 혹은 핵심인력은 제1회 공제부금 납입일 이전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 혹은 핵심인력은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납입기준] ①공제부금은 중소기업의 기여금과 핵심인력의 납입금을 합산하여 월 최소 34만원으로 하고, 1만원 단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기여금은 월 200만원,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중소기업의 월 기여금은 핵심인력의 월 공제납입금의 2배 이상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기여금과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을 각각 월 14만원으로 합니다.

[부금의 미납]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가 1개월분 이상 공제부금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그 지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계약의 당사자인 중소기업 또는 핵심인력이 연속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청구] 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 혹은 핵심인력은 공제계약의 취소 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의 지급] 공제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공제약관 제22조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중도해지사유 발생일까지 계약자가 적립한 공제부금 납부누계액과 약관 제38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제금의 지급청구] 공제금 수급권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약관 제27조의 구비서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금의 지급] ①공제 가입 핵심인력이 약관 제 12조에 의한 공제가입기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한 경우 핵심인력에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기여금 납부누계액과 핵심인력의 공제납입금 납부누계액 및 약관 제38조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액의 합계를 핵심인력에게 지급합니다.

[공제계약 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가입 핵심인력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관 제29조 내지 제37조에 의하여 공제계약 대출을 운용합니다.

[제(諸)이율의 결정 및 공시] ①제(諸)이율은 약관 제39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諸)이율을 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

[부당행위 기업 제재] 사업주의 공제가입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공제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임금조정, 중소기업 기여금 대납 등 공제사업과 연계한 기업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약관 5조에 따른 공제 가입제한 사유에 해당되며, 중도해지 시 약관 제22조의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분쟁조정 신청] 계약자 및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약관 사본을 수령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확인시 √ 표기)

신청 핵심인력은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지 않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이며, 동 공제 신청 관련 기업의 부당행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시 √ 표기)

* 사업주의 공제가입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공제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임금조정 등

기업이 납입하는 중소기업 기여금은 만기금 수령 시 청년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편입되어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이 부과되며, 신청기업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시 √ 표기)

* 특수관계인 :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4촌 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특수관계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제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해 기업과 핵심인력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으로써 「함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성과공유협약」에 동의합니다. □ (확인시 √ 표기)

회사명		대표(이사) 성 명		서명	
		핵심인력 성 명		서명	

*** 계약자(중소기업, 핵심인력)는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이사, 성명)을 자필 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 직원>

소속		직위		담당자명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의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및 제33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계약, 유지, 사업관리, 정책자료 활용, 교육복지사업(보험, 교육 등)운영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기업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업종, 상시근로자수, 업력, 계좌정보,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등)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수집 ▶선택적 정보 : **대표자 운전면허번호**, 인지경로조사 * 중진공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0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80조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되며, 공제 가입이 성립될 경우, 공제가입기간(3~10년) 종료 후 국세기본법 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10년 동안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 등이 가능합니다. ▶위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 공제부금 지원기관, 연구용역 수행기관, 교육복지사업(보험, 교육, 휴가비지원, 건강검진, 농어촌체험연수) 관련 당해 계약기관** * 수행기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인 경우만 제공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공공기관 정책자료, 공제가입·변경·지급신청 대행, 교육복지사업(보험, 교육, 휴가지원, 건강검진, 농어촌체험연수) 운영에 활용**
제공할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업체명, 업체 주소, 업체연락처, 업종, 상시근로자수, 계좌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개인정보는 제공일로부터 1년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공제 가입 성립 등 각각의 제공처에 따라 추가보관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추가로 보관됨을 안내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법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법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법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운전번호)동의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진공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0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80조3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기 업 체 명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대 표 자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핵심인력/청년근로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및 제33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계약, 유지(사업자등록상태조회 등), 사업관리, 정책자료 활용, 교육복지사업(보험, 교육 등) 운영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기업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 업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특수관계인 여부 등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수집 ▶선택적 정보 : **운전면허번호**, 최종학력, 부서, 직위, 직종, 연봉, 담당업무, 직무경력연수, 전공분야, 자격증, 주요업무내용 * 중진공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0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80조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되며, 공제 가입이 성립될 경우, 공제가입기간(3~10년) 종료 후 국세기본법 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10년 동안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 등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 공제부금 지원기관, 연구용역 수행기관, 교육복지사업(보험, 교육, 휴가비지원, 건강검진, 농어촌체험연수) 관련 당해 계약기관** * 수행기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인 경우만 제공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공공기관 정책자료, 보험금 지급, 공제가입·변경·지급신청 대행, 교육복지사업(보험, 교육, 휴가지원, 건강검진, 농어촌체험연수) 운영에 활용**
제공할 항목	기업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 업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자택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개인정보는 제공일로부터 1년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공제 가입 성립 등 각각의 제공처에 따라 추가보관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추가로 보관됨을 안내드립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운전면호)동의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진공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0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80조3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공제가입 (핵심인력/청년근로자) 선택적 정보 기입서

성명		업체명	
최종학력	☐고졸이하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전공분야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기타		
총급여(연봉)	원	현직무 총경력	년
직 위	☐사원급 ☐대리(주임)급 ☐과장급 ☐차·부장급 ☐임원급 이상		
직 종	☐사무관리직 ☐연구직 ☐기술직 ☐생산기능직 ☐판매직		
담당업무			
직무관련 보유 자격증 (종목, 분야)	☐ 기술사 (_____) ☐ 기능장 (_____) ☐ 기사 (_____) ☐ 산업기사 (_____) ☐ 기능사 (_____) ☐ 전자상거래관리사 ☐ 게임그랙픽전문가 ☐ 게임기획전문가 ☐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변호사 ☐ 노무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기타 (_____)		

내일채움공제

부당행위 · 부정수급 안내 및 서약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에게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근로자에게는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으로 아래의 사례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는 부당행위 및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법률상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 부정수급 예시]

부당행위	부정수급
① 부당한 임금조정 유형 - 공제가입 사유로 전년대비 임금 삭감 또는 타 근로자 대비 낮은 임금 ② 강요 등에 의한 기업납부금 대납 유형 - 기업납부금을 근로자가 대납(급여공제)하는 행위 - 기업납부금 납부 후 근로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돌려받는 행위 ③ 직장내 괴롭힘 - 공제가입 사유로 직장내 폭언 또는 괴롭힘 등	① 가입제한 대상자의 공제상품 가입 - 사업주, 특수 관계인의 공제 가입 -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의 가입 ② 정부지원금 수령 목적 일체 행위 - 퇴사자, 미근무자의 공제유지 - 기업과 근로자간 상호 협의 또는 합의 하에 기업 납부금을 근로자가 대납 - 제출서류의 위·변조 제출 등

1. 본인(기업, 근로자)은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함에 있어 상기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없음”을 서약합니다

2. 본인(기업, 근로자)은 내일채움공제를 유지함에 있어 부당행위 또는 부정수급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표(이사)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근로자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부당행위시 부당이득금 반환 서약서-기업

동사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공제가입 근로자 대상 아래의 부당행위 사례가 발생한 경우 공제약관에 따른 불이익(기업귀책에 따른 중도해지, 가입제한)외 가입 근로자로부터 받은 직·간접적인 부당이득금을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중소기업의 가입 근로자 대상 부당행위 예시]

부당행위 유형	부당행위 사례
부당한 임금조정	1 공제가입 사유로 전년대비 임금 삭감 2 공제가입 사유로 타 근로자 대비 낮은 임금
강요 등에 의한 기업납부금 대납	3 기업납부금을 근로자에게 대납(급여공제) 강요 4 기업납부금 납부 후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돌려줄 것을 강요

1. 본인(기업)은 위 예시의 경우와 같은 부당행위로 확인된 경우* 가입 근로자 대상 부당이득금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 할 것을 확약합니다

 * 정부(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법원 및 경찰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결과

2. 본인(기업)은 경영상의 사정 등으로 부당이득금*을 즉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 근로자와 합의하여 합의한 기한 내에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정부(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법원 및 경찰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결과를 참조하되, 추가 증거서류 제출 등을 통한 상호 합의를 통해 부당이득금 조정 가능

3. 본인(기업)은 위 부당이득금 미 반환 또는 합의결렬에 따라 가입 근로자가 법적조치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것을 확약합니다.

 * 위 부당행위로 인한 중진공이 공제약관에 따른 불이익 처분시에도 의의 부제기 확약함

2026. . .

대표(이사)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붙임 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